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5. 9.(목) 15:00 < 5.10.(금) 조간 > 배포 2024. 5. 9.(목)

덜커덩! 도로 위 단차 사라진다

- 도로 위 함몰된 맨홀 단차 측량하여 평탄화 제품 실증
- 모바일 신분확인 및 세금 환급으로 외국인 관광 활성화 기대

보행 및 차량 주행시 사고의 원인이 되는 함몰된 맨홀 단차를 신속 보수 가능한 평탄화 제품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9일, '24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9개 과제를 심의·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심의안건 목록 ☞ 【참고1】, 과제별 상세내용 ☞ 【참고2】)

'알엠씨테크'는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맨홀충격방지구'를 실증한다. 맨홀은 상하수도, 전기 등 시설관리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설치 이후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가 발생되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맨홀충격방지구는 도로와 함몰된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 후 맨홀 위에 설치하여 높이를 맞추는 방식이다. 이번 특례를 통해 맨홀 수명의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한다. 맨홀 주변의 포장면 파쇄가 필요한 기존 보수 방식에 비해 빠른 공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유지보수비 또한 기존시공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제성이 우수하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대상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 시스템을 실증한다. 여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정보를 등록하면 사후면세점, 관광호텔, 의료기관 등에서 실물여권 소지없이 신분확인 및 세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지난해부터 면세점과 카지노에서 외국인 출입에 대한 실증을 성공적으로 진행(로드시스템 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례로 실증 영역이 호텔, 병원 등으로 확장된다. 여권 분실을 방지하고 환급서비스의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비금속 음이온 수전해설비, 소규모 태양광 거래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517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하여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	책임자	팀 장	전두민 (044-203-4520)
		담당자	사무관	김병규 (044-203-45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및 승인과제**

□ 위원회 개최 개요

○ **(개최목적)** 규제특례 신청안건 심의·조정 (근거: 산업융합촉진법 제8조)

○ **(위원구성)** 위원장(산업부장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25명

○ **(심의기간)** '24.5.2~5.8 (서면심의) → 5.9(목) 의결

○ **(의결안건)** 총 9건 (실증특례 8건, 임시허가 1건) ☞ 가결

□ 승인과제 목록

연번	구분	기업(기관)명	과제(안건)명
1	실증특례	알엠씨테크	맨홀충격방지구
2		예스티	비금속 배관 및 피팅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 수전해설비
3		신성이앤에스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활용한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거래 및 나눔
4		글로벌텍스프리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5		풀무원푸드앤컬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6		제너시스 비비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7		오티디코퍼레이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8		헤링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9	임시허가	비공개(기업요청)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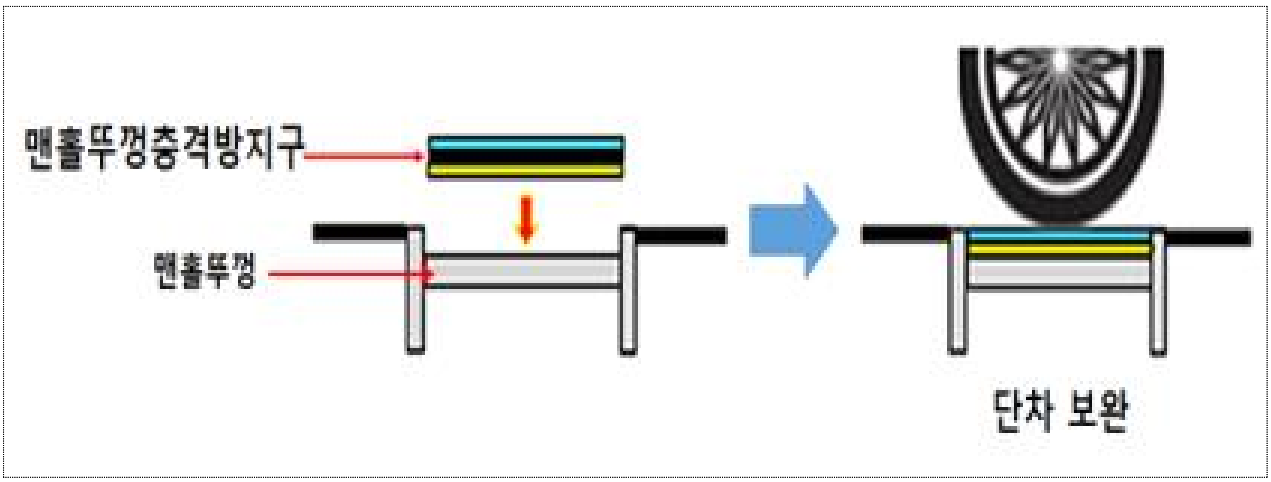
참고 2 **주요 승인과제 내용**

① 단차가 발생한 맨홀 뚜껑 위에 충격 방지구 설치 → 함몰된 도로를 평탄하게 보완해 도로 인프라 안전하게 유지한다

□ ㈜알엠씨테크는 함몰된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하여 도로를 평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맨홀 충격 방지구' 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실증한다.

○ 신청기업은 신소재인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활용해 맨홀 충격 방지구를 제작, 지자체에서 설치해 관리하는 맨홀 중 C·D등급(단차 12~15㎜이상)의 맨홀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설치 예정이다.

<맨홀 충격 방지구>



□ 「도로상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작업구(맨홀) 뚜껑은 KS 등 규격품 또는 조달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의 뚜껑 위에 설치하는 부속품(가칭 : 맨홀 충격 방지구)에 대한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은 부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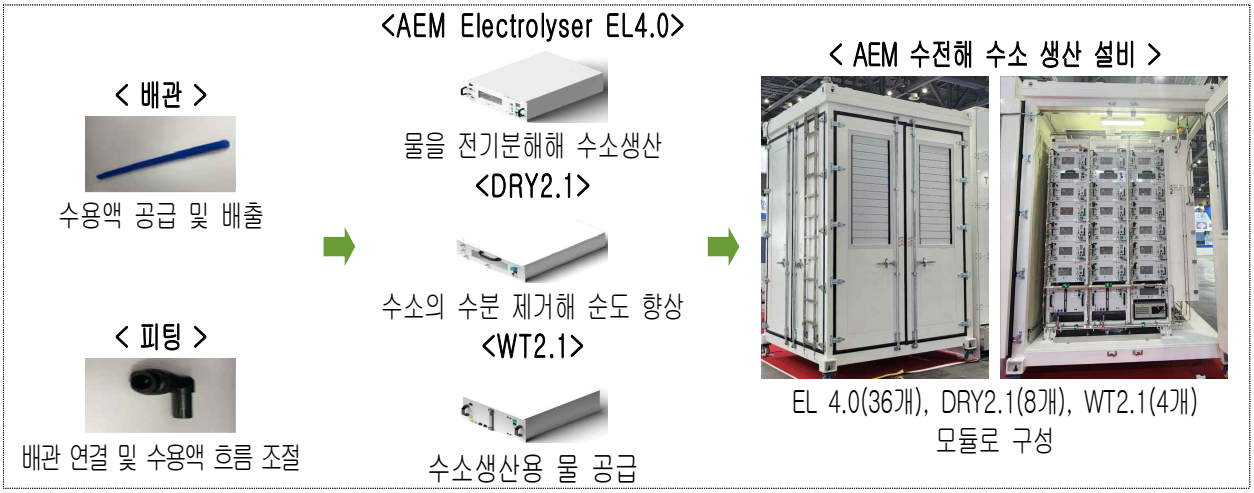
□ 신청기업은 도로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맨홀 충격 방지구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지자체 도로관리청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등(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중단 등) 마련 ▲하수도설계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 해당 제품을 활용해 맨홀 파손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민원 발생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플라스틱 배관과 피팅으로 수전해 설비 제작 가능!
→ 저비용, 고효율 수전해 모듈로 탈탄소, 수소경제 전환에 이바지

□ ㈜예스티는 수용액이 통하는 배관 및 피팅 부분을 비금속 재질로 제작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설비에 대한 실증사업을 실시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한다.

<비금속 배관 및 피팅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설비>



□ 수전해 설비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수소용품으로, 현행법상 수전해 설비 제조시 수용액이 통하는 배관은 금속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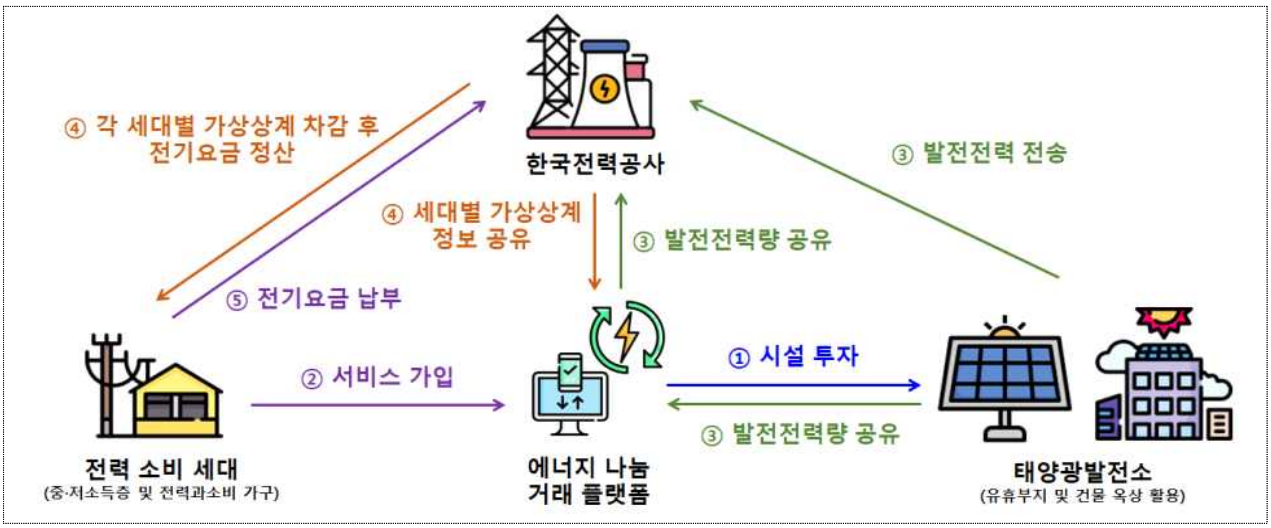
○ 신청기업이 사용한 비금속 피팅 및 배관은 가공·조립이 편리하고 유지보수 비용 및 시간이 단축되어 설비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수소법령 준수(수소용품 제조허가, 수소용품 검사 등) ▲ 고압가스법 준수(인허가, 검사·인증 등) ▲자체 안정성 평가 실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자료 제공 협조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 비금속 재질을 활용한 수전해 설비 실증사업을 통해 기업에서 소형, 모듈형 구조의 수전해 설비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탈탄소,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유휴부지에 소규모 태양광 설치하고, 생산된 에너지는 거래 · 나눔 → 저소득층 가구 에너지복지 증진, 전력과소비 가구 요금절감 동시에

□ ㈜신성이앤에스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유휴 부지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총 최대 100MW)를 설치하고, 발전소 별 일정비율(최대50%)의 재생에너지를 개별 전력소비세대와 거래하거나 나눔하는 플랫폼을 실증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활용 재생에너지 거래·나눔 모델>



□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300kW 미만 재생에너지전력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직접 및 제3자간 거래)가 불가하다. 또한, 전기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을 동시에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것이 불가했다.

□ 신청기업은 취약계층에 전기를 무상 공급하고 에너지다소비자에 전력을 판매하여 누진요금을 완화하는 취지로 실증사업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전기요금 상계에 사용한 발전량에 대해서는 REC 발급 불가 ▲망이용요금, 망손실비용,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전력기반기금 부담금 등 부대비용 납부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지리적 · 경제적 요건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세대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요금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에너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여권이 없이도 모바일로 신분확인 가능
→ 여권정보를 등록한 모바일앱으로 사후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이 신분확인

□ 글로벌텍스프리㈜는 여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모바일 플랫폼(앱)을 통해 여권 정보를 등록하면, 사후 면세점과 특례적용 관광호텔 및 특례적용 의료기관의 신분확인에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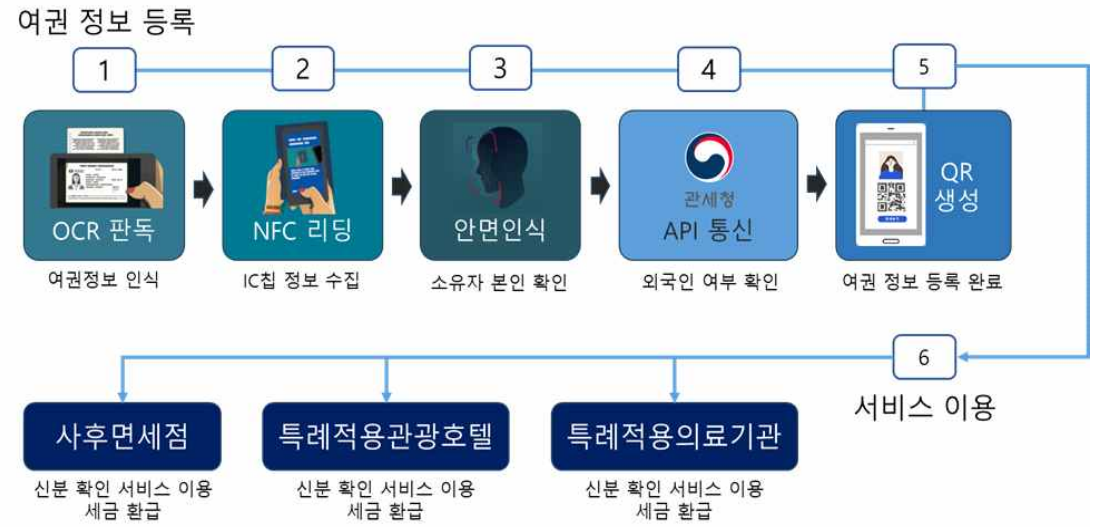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관광객 면세규정」등 관련 법 및 규정 상 면세판매자 등은 여권 및 여권 등(여권증명서, 선원신분증명서 등)만을 통해 신분확인하게 되어있어 여권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는 활용 불가하다.

○ 신청기업은 이러한 규제애로를 극복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해당 서비스 활용 시, 실물여권 소지에 따른 불편함, 분실위험 해소 등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 개선 가능한 점, ▲사후면세점 부정환급 방지 및 외국인 신분확인에 따른 행정절차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분기별 보고 및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등

○ 글로벌텍스프리㈜는 안면인식 기술, OCR 판독과 NFC 태그 리딩 기술을 통해 실물 여권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세청 연동을 통해 외국인 여부 확인 등을 진행한다.

<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개요 >



□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향후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⑤~⑦ 반려동물과 음식점 및 카페에서 함께 티타임!
→ 반려동물과 음식점 및 카페 동반출입 가능

□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3개社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현행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불가하다.

○ 신청기업은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하여 안전성 검증을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식품위생 등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3개社는 식약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라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실증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여부 기록관리 등

< 반려동물 동반출입 프로세스>

	→		→	
① 방문 및 동반 출입		② 공간 착석		③ 서비스 이용

□ 동 과제를 통해 반려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 등으로 펫-휴머니제이션 시대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익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 반려동물 동반출입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⑧ 건강기능식품 : 상담을 통해 필요한 영양제만 맞춤형으로 구매 →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

□ ㈜헤링스는 개인별 체질 특성 및 건강상태에 따른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소분·판매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일정 요건하에 제한적으로만 소분 제조가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한 상황이다.

○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의무표시사항을 제품에 잉크로 표시해야 하지만, 다양한 조합이 발생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에 어려움이 있다.

○ 위원회는 소비자가 개인마다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적으로 섭취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부가조건)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등 준수

○ 특례가 부여된 ㈜헤링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상담·추천·판매할 예정이다.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프로세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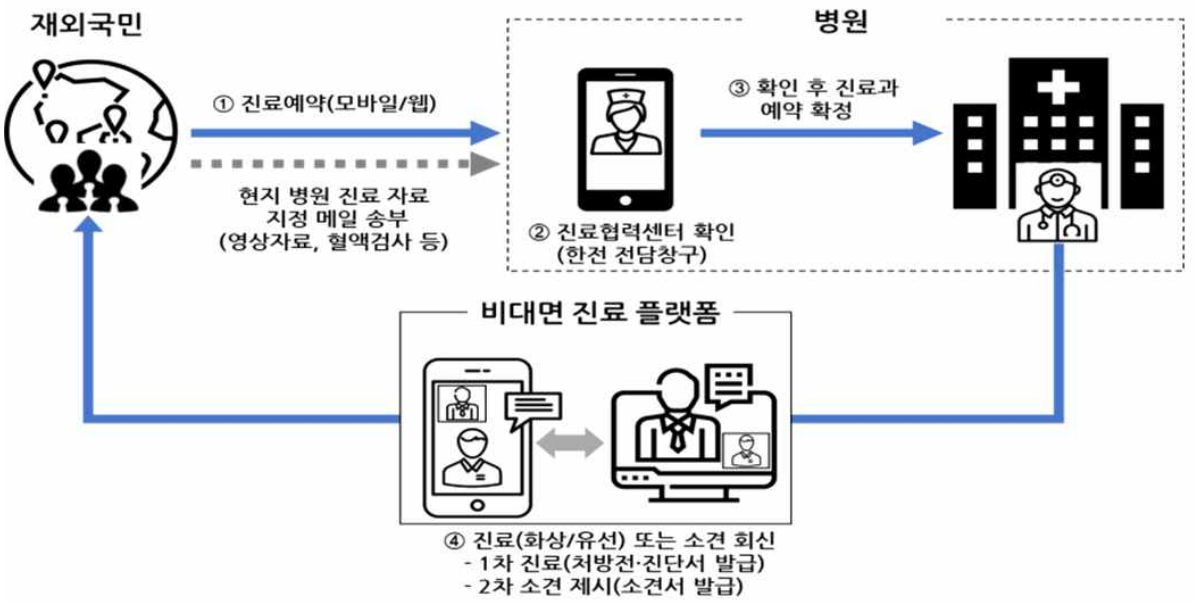
□ 금번 승인이 과다 섭취 및 오남용 방지 등 합리적 소비와 개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⑨ 재외국민과 국내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연결한다
→ 규제샌드박스 비대면 진료로 재외국민 의료복지 증진

□ 신청기업은 해외에 거주·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 신청기업은 해외 현지와의 음성·영상 통화 등을 통해 국내 전문 의료진의 진료, 처방전 발급 및 현지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에 대한 2차 소견서 발급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개요 >



○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의료업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하여 비대면 진료는 시설·장비를 갖춘 의료인 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 위원회는 旣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사업이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승인하였다.

○ 다만,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재외국민이 국내 복귀 후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였다.

□ 동 서비스를 통해 현지 의료서비스 수준, 의사소통 한계 등으로 제약되는 재외국민의 건강권이 증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